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41조의9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문	처 분 내 용
1. 삭제 <2014.9.19.>		
2.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 21 조 제 3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2의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 21 조 제 4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 21 조 제 5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 21 조 제 6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5. 신고한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21 조 제 7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 운송가맹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 21 조 제 8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 21 조 제 9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0호 및 제41조의11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9.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1호 및 제41조의11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10. 화물자동차(영 제9조의4에 따른 차량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2호 및 제41조의11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11. 삭제 <2018. 12. 31.>		
12.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4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13. 삭제 <2014.11.28.>		
14.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 및 제41조의11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15. 삭제 <2018. 12. 31.>		
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제21조제20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삭제 <2024. 12. 18.> 나. 삭제 <2024. 12. 18.>	제21조제20호 및 제41조의11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60일)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	제21조제21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 · 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 작하거나,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구난 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1조제21호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18.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 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 및 제41조의11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사업 전부정지(30일)
1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 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4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60 일)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배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 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가맹사 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제21조제25호 및 제41조의11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9호의 경우
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제10호의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영 제9조의4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
에 대해서는 영 제9조의3제1항 전단 및 별표 4 제2호차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